

제품판매 계약서

제1조 (다단계판매업자(회사)에 관한 사항)

- 상호 : 뉴스킨코리아 주식회사
- 공동대표이사 : 마이클제임스켈러, 권영동
-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86길 6(삼성동)
- 전화번호 : 1588 - 1440
- 전자우편주소 : information_kr@nusk-in.com

제2조 (다단계판매원(판매자)에 관한 사항)

- 성명 :
- 판매원번호(KR번호) :
- 주소 :
- 전화번호 :
- 전자우편주소 :

제3조 (제품판매에 관한 사항)

- 제품 등의 명칭, 종류 및 내용
 - 제품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
 - 제품 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
- ※ (덧붙임) '제품명세 및 수령증' 참고

제4조 (계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)

-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품구입 계약의 철회 또는 그 계약을 해제(청약철회 등)할 수 있습니다.
 - 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. 다만,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제품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
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
 - 제품판매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
 -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약관을 받은 경우
 -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
 - 제품판매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
 - 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판매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 -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. 다만, 제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.
 - 소비자가 제품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
 -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
 - 복제할 수 있는 제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 -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동의를 받은 경우
-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품 등의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제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판매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품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(試用)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- 청약철회 등의 방법 : 서면(청약 철회·계약 해제 통보서) 또는 유선으로 청약철회 등의 의사 통지
- 청약 철회·계약 해제 통보서: 본 계약서 하단 또는 판매자 홈페이지 (<http://www.nuskirmail.co.kr>) 자료실 게시

제5조 (청약철회 등의 효과)

- 상대방(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말하고,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를 말함)은 전조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제화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판매자(상대방으로부터 제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, 본 조의 규정에서 같다는 제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제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제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른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제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 - 공급일부터 1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: 공제금액 없음
 -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: 제품가의 5퍼센트
 -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: 제품가의 7퍼센트
- 상대방이 신용카드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그 결제업자에게 제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. 다만, 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제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,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판매자는 전 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라 제화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제1항의 경우 판매자는 제화등의 일부가 이미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그 제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제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

하는 금액의 지급을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제품구입과 관련하여 사은품을 제공받았을 경우 해당 사은품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, 만일 해당 사은품을 사용·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사용·소비된 사은품의 가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-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제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, 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판매자, 상대방으로부터 제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6조 (제품 교환, 반품, 보증, 대금환불의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)

- 교환, 반품, 대금 환불에 관한 사항 : 제3조 준용
- 제품보증
 - 본 제품은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는 경우 의도된 목적을 위한 품질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합니다.
 - 소비자는 본 보증과 별도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권리를 포함하여 허용되는 권리를 가집니다.

제7조 (소비자피해보상, 제품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)

- 소비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하여 구매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판매자는 이를 위하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- 제품에 관한 불만은 판매자에 유선 또는 서면(이메일 포함)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판매자는 소비자의 통지내용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.
- 판매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소비자와의 분쟁을 처리합니다.

제8조 (약관의 성질)

본 제품판매 계약서는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 일괄적으로 교부되는 계약서로서, 제품거래에 관한 '약관'의 성질을 지닙니다.

(판매자)

주소 :
생년월일 :
성명 : (인)

(소비자)

주소 :
생년월일 :
성명 : (인)

청약 철회·계약 해제 통보서

수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	
성명	회사대표 귀하
주소	
연락처	
발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	
성명	
주소	
연락처	
계약 관련 사항	
상품·서비스명	
계약 연월일	계약서를 받은 날
상품·서비스를 제공받은 날	상품 수량
계약금액	이미 지급한 금액
계약 경위 및 상황	
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사유	
제품의 현재 상태	
기 타	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함을 알립니다.	
년 월 일	
성명	
(서명 또는 인)	

제품명세 및 수령증 (뒷면)